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일부장관의 고발의무 삭제 및 시정요구권 재량화 등〉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43호)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29.
3. 회 부 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통일부장관의 고발의무 삭제 및 시정요구권 재량화(안 제11조)

- ☐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의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의무 사항에서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u>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u>	제11조(시정요구) ----- ----- ----- ----- <u>요구할 수 있다.</u>

-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통일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정 이래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현행 조항이 통일교육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다양한 관점의 통일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현행법 제11조 관련 주요 제기 의견 〉

연구명	관련 내용	연도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법 적용이 엄격하지 못하고 악용될 소지가 크며 실효성이 부족함. 또한 특정 주제의 교육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서 규제와 처벌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려움	2018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나 논의를 불러낼 수 있는 통일교육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고, 정부가 제시한 정답 중심의 통일교육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됨	2019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과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제11조는 삭제되어야 함.	2019

자료: 통일부

□ 이에 개정안은 실효성 낮은 통일부장관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고발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의무도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고발의무 조문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재량사항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고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 의무를 삭제할 경우, 통일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시행일 및 적용례(안 부칙)

-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함.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일과 관련하여, 동 개정안은 법률의 집행기관이 하위규정 마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 제1조와 같이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에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¹⁾
- 적용례와 관련하여, 신법이 수범자에게 유리한 경우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²⁾을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1) 법률의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현재 1998. 11. 26. 97헌바65

문 의 처
02)6788-5268